

■ 문화관광과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2006년말 현재액	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			2007년도말 예상액
		수입	지출	차액(적립)	
아름예술제진흥기금	400,000	48,400	18,400	30,000	430,000
체육진흥기금	28,787	2,036	0	2,036	30,823

◆ 아름답예술제 진흥기금(p9)

- 아름답예술제 진흥기금은 '96. 10. 14. 조례 제1408호에 의거 향토 문화예술축제인 아름답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재원조성방법은 출연금과 행사잉여금,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있으며,
 - 지원기준은 매년 아름답예술제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행사비의 일정부분을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기금을 지출하고 있음.
- 기금조성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, 2006년말 현재 400,000천원의 기금이 조성 적립되어 있으며,
 - 2007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분야에서는 48,400천원(군비출연금 30,000천원, 적립금이자 18,400천원) 이고
 - 지출분야에서는 18,400천원으로 이는 기금의 사용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토록 한 거창군 아름답예술제 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었음.

- 그러나 아림예술제 개최에 따른 행사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006년도에 100,000천원이 지원되었고, 2007년도에도 지난해보다 20,000천원이 증액된 120,000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볼 때,
 - 1개의 행사에 일반회계에서 지원(120,000천원) 되고, 기금에서 지원(18,400천원)되는 중복지원의 개연성과 행정의 비효율적인 면이 많으며
 - 특히, 전체 행사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(부족시 증액편성)만으로도 행사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므로
- 향후 기금운용 대상사업의 재검토와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등 사업비(기금) 정산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◆ 체육진흥기금(p14)

- 체육진흥기금은 '95. 4. 2. 조례제1358호에 의거 거창군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써 주요규정을 살펴보면
 -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액 범위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,
 - 기금사용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
 - 기금조성 재원은 군 출연금 및 보조금과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, 사용료 수입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.
- '95년 설치이후 11년이 경과한 2006년도말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28,787천원이 적립되어 있는 실정이며
 - 2007년도 수입계획은 사용료와 적립금이자인 2,036천원만 계상하고 지출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.

- 또한 기금운용계획서상에 기금사업의 목표액 및 세부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며, 현재 군비 출연금도 전무하여 공공시설 사용료와 비교적 적은 기금 이자액만 매년 적립되고 있어, 당초 목적의 기금 운용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됨.
- ※ 참고로 각종 체육대회개최·참가지원 등('07도민체전 158,000천원, 군민체육대회 134,000천원 등)에 따른 필요한 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군비 지원됨.
- 따라서 향후 출연금 확보방안 등 기금 적립액의 확대 및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현 기금운용조례의 운용에 대한 재검토와 기금운용·사용(지원)방법, 우수선수 선발지원 기준 등 세부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